

준용한다.

제 5 조(방법원의 파견)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 6 조(근무상한연령)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.

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.

제 7 조(당연퇴직)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제 8 조(면직)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
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,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

제 9 조(휴직)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, 다만,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0조(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고용직공무원이 제9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휴직기간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·보건소 및 동사무소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(이하 "휴직자정원관리단위"라 한다)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정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 임용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

복직된 후 휴직자정원관리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,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징계)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. 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(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)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.5.10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[별표]

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,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

1종	2종	경노무	근무상한연령
방법원			53세
		사 환	23세

비고: 방법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,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

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출연금
- 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용자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- 1. 사용시설자금: 기존주택(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)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
- 2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

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, 도시가스 사업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한다.

②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용자대상자)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사용시설자금: 수용가
- 2. 공급시설자금: 일반도시가스사업자

제6조(용자범위) 이 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사용시설자금: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% 이내
- 2. 공급시설자금: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

제7조(이자율등)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사용시설자금: 년리 8%(3년 균등분할상환)
- 2. 공급시설자금: 년리 8%(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)

제8조(용자신청절차등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가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용자지급여부를 용자대상자에게 통보 및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용자토록 추천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내용의 적정여부
- 2.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등

③기금의 용자지급 통지를 받은 용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 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용자금을 요청한다.

제9조(지방재정법등의 준용) 은행에 대한 감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금고"는 "은행"으로 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%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본문중 "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"을 "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"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"을 "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